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1,606,871,127	48,206,134
일반회계		1,352,474,356	40,574,231
특별회계		254,396,771	7,631,903
1	공기업특별회계	199, 145, 945	5,974,378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87,378,802	2,621,364
	하수도사업특별회계	111,767,143	3,353,014
	기 타 특 별 회 계	55,250,826	1,657,525
	주택사업 특별회계	72,555	2,177
	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9,001,292	270,039
	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	704,000	21,120
	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18,002,144	540,064
	교통사업특별회계	23,463,345	703,900
	대지보상특별회계	500,000	15,000
	수질개선특별회계	3,507,490	105,225

- 제 2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과 같다.
- 제 3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『해당없음』으로 한다.
- 제 4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『해당없음』으로 한다.
- 제 5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『명시이월사업조서』와 같다.
- 제 6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『890,979천원』으로 한다.
- 제 7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『3,000,000천원』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『기준인건비』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-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